

제 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

부문 명세서

이 부문에는 아래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.

1. 보상한도

총보상한도 : 적용하지 않음

생산물 / 완성작업 담보 : 대인 1인당 1억원 / 1사고당, 총보상한도액 5억원
(식음료에 한함)

일반배상책임 : 대인 1인당 2억원 / 1사고당 10억원
대물 1사고당 2억원

구내치료비 : 대인 1인당 3백만원 / 1사고당 5백만원

주차장배상책임 : 대인 1인당 2억원 / 1사고당 10억원
대물 1사고당 5천만원

물적손해확장담보 : 대물 1사고당 / 총보상한도 2천만원

2. 공제금액 : 1사고당 1십만원 단, 생산물배상 1사고당 3십만원
/ 구내치료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

3. 소급일 (손해배상청구기준에만 적용)

이 증권의 제4부문 2는 아래에 기재된 소급일 이전에 발생한 “신체장애”또는 “재물손해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소급일 :

참조번호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, 이 부문내에 상술되어 있는 해당담보, 배서, 추가사항이 효력을 갖습니다.

담보 : 2016년 6월 16일

배서 : 0000

추가조항 :

부문명세서 발효일 : 2016년 6월 16일

(기존 부문명세서에 대체하여)